

# 서울특별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0025
----------	------

2010년 8월 13일  
행정자치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0년 8월 9일, 박진형 의원외 78명
- 나. 회부일자 : 2010년 8월 10일
- 다. 상정결과 : 제22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10년 8월 11일)상정, 의결(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박진형 의원)

### 가. 제안 이유

- 서울시가 광장사용을 독점하거나 자의적 판단을 통해 광장사용 요청에 대해 불허 결정을 한다는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명칭을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기능에 “광장사용신고에 따른 수리 여부, 경합이 있는 신고의 처리, 신고수리내용의 변경 등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 2009년 세운초록띠광장이 개장됨에 따라 현행 서울광장·청계광장·광화문광장과 더불어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도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함.
- 위원회의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관련 규정을 개선함.

## 나. 주요 내용

- 제명과 위원회의 명칭을 “광장운영시민위원회”에서 “열린광장운영 시민위원회”로 변경함(제명, 안 제1조, 제3조).
-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도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함(안 제1조, 안 제2조).
- 위원회의 기능에 “광장 사용신고에 따른 수리 여부, 경합이 있는 신고의 처리, 신고수리내용의 변경 등에 대한 자문”을 추가함(안 제3조제3호 신설).
-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학식과 경륜을 갖춘 학계 전문가, 시민과 시민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서울특별시 의회 의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3항).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박 용 훈)

### 가. 제명 및 위원회 명칭 변경(제명, 안 제1조, 제3조)

- 현재 「서울특별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는 각각 조성시기, 조성목적, 시설내용, 주관부서 등이 다르고, 별개의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2009년 7월 본 조례의 제정에 의해 설치되었음.

※ 서울광장 등 3개 광장은 서로 인접해있고 인근에 덕수궁, 경복궁, 청계천 등 관광 명소가 산재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행사 등의 개최를 원하는 공공기관 및 각종단체 등의 광장 사용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광장마다 운영주관 부서가 다른 관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렵고 행정기관의 일방적 광장 사용 허가 결정에 비판적 의견이 대두되어 광장운영시민위원회를 통해 광장 운영에 대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의 마련은 물론 광장 운영과 관련된 각종 결정에 대한 공신력 향상, 광장 운영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설치되었음.

- 본 개정안은 제명 및 안 제1조와 제3조의 ‘서울특별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 명칭을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가 광장사용을 독점하거나 자의적 판단을 통해 광장사용 신청에 대해 불허 결정을 한다는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한 상징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며, 위원회의 명칭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입법재량의 영역이라 할 것임.

#### 나. 위원회의 기능 확대(안 제3조제3호 신설)

- 현행 광장 운영의 기본계획 및 연간계획과 전반적인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한 위원회의 기능에 “광장의 사용신고에 대한 불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 경합이 있는 신고의 처리, 신고수리내용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까지도 추가하도록 안 제3조제3호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 본 개정안은 정승우의원외 ○○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6조 및 제7조에서 신고에 대한 불수리, 공익적행사의 결정, 신고수리의 내용 변경 또는 취소할 경우에 본 조례에 근거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개정안과 연계하여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 할 것임.

- 현재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행사의 절반 가까이가 서울시나 정부가 주최하는 행사이고 자의적인 판단기준에 따라 허가를 한다는 비판을 불식시키고 광장사용에 대한 민주적 통제 기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됨.
- 다만, 불수리 사유나 경합이 발생하여 개별적인 광장사용 신고건마다 위원회의 소집 및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수시 회의 개최의 어려움 등에 대한 대책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현재 서울광장이외의 다른 광장 조례(광화문광장, 청계천광장, 세운초록띠광장)의 경우 신청 및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바, 본 개정안의 적용은 서울광장의 경우에만 해당될 것이나 향후 광장관련 조례의 통합 제정이나 다른 광장조례의 개정도 검토하자는 의견이 있음.

※ 현행 제7조제3항은 정기회를 분기별 1회 개최하도록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하고 예외규정으로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그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정기회가 개최되도록 하였는데 최근 6월 17일 개최를 포함하여 총 5회가 개최된바 있음.

#### 다. 세운초록띠 광장 운영 심의 추가(안 제1조, 제2조)

- 본 개정안은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과 더불어 2009년 5월 30일 개장한 세운초록띠광장에 대한 사항도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음.
- 종로구 장사동 116-3번지 일대(구 현대상가)에 조성된 세운초록띠광장은 도시계획시설이 광장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 사용 및 관리를 위해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2009.11.11 공포·시행)되어 있음.

※ 세운초록띠광장 조성사업은 종로, 을지로 등 주요 가로를 중심으로 5개의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하여 노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도심 한가운데 폭 90m, 길이 1km에 이르는 대규모 녹지대를 조성하는 사업이며 세운 초록띠 공원 조성사업은 총 3단계로 나누어 시행되는데, 1단계는 종로~청계천 구간 중 현대상가 구간(폭 70m, 연장 90m)으로 2009년 5월에 완공되었으며, 2단계는 잔여 세운상가 가동을 포함한 청계상가, 대림상가 일대의 청계천~을지로 구간(폭 90m, 연장 290m)으로 2012년 완공예정이고, 3단계는 풍전상가, 진양상가 일대의 을지로~퇴계로 구간(폭 90m, 연장 500m)으로 201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광장 운영에 대해 통합적이고 민주적인 운영방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만큼 세운초록띠광장 역시 조성이 완료되고, 관련 조례가 제정된 점을 감안할 때, 본 조례도 함께 개정되었어야 하는 사항이라 할 것임.

**라. 전문가와 민간위원의 과반수 임명 및 의회의장 추천권 신설(안 제4조)**

-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제4조제3항에서 현행 제1호 ‘학식과 경륜을 갖춘 학계 전문가, 시민’과 제2호 ‘시민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단체)’을 과반수로 하도록 하고, 이들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구성) ① ----- -----.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③ ----- -----,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위원을 과반수로 하되,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한다.
1. 학식과 경륜을 갖춘 학계 전문가, 시민	1. 학식과 경륜을 갖춘 학계 전문가, 시민
2. 시민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단체)	2. 시민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단체)
3.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2명	3.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2명
4. 서울특별시 3급 이상 공무원	4. 서울특별시 3급 이상 공무원

- 현재 위원회의 구성·운영현황을 살펴보면, ① 학식과 경륜을 갖춘 학계 전문가·시민 7명, ② 시민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비영리민간단체) 3명, ③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2명, ④ 시 3급이상 공무원(문화국장, 행정국장, 도심활성화기획관) 3명 등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현재 위원 중 시의회 의원과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 위원을 2/3에 해당하는 위원구성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미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조례로서 이에 대한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여 향후에도 광장운영에 대한 다양한 시민위원의 참여통로 보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안 제4조제3항과 같이 제1호와 제2호의 위원을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것은 집행부의 뜻에 맞는 인사를 집행부가 위촉하는 독단적인 운영을 방지하고 다양한 의견을 가진 민간위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임.
- 다만, 다양한 의견을 가진 민간위원을 의회에서 공정하게 추천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최초 위원 선정 과정을 살펴보면 제1호의 학계전문가, 시민은 광장운영 관련 부서(행정국 등 관련부서)의 추천(4배수)하고, 제2호의 시민단체는 인터넷 공모를 통한 후보자 중에서 심사절차를 거쳐 시민단체 3명과 학계 전문가, 시민 7명이 최종 선정되었음.

- 또한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추천권 행사에 있어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되 위원을 의회의장이 추천토록 하는 규정(단서조항)의 신설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지에 대한 법률적 논쟁이 제기될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 요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8명, 찬성: 7명, 반대 1명)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서울특별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 및 광화문광장의 운영”을 “· 광화문광장 및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관리”로 하고, “서울특별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로 한다.

제2조 중 “ 및 광화문광장(이하 “광장”이라 한다)의 운영에”를 “· 광화문광장 및 세운초록띠광장(이하 “광장”이라 한다)의 사용·관리에”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서울특별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로 하고, 현행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광장 사용신고에 따른 수리 여부, 경합이 있는 신고의 처리, 신고수리내용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제4조제3항 중 “제3호까지의 위원을 과반수로 한다.”를 “제2호까지의 위원을 과반수로 하되,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한다.”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서울특별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광장·청계광장 및 광화문광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두는 <u>서울특별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u>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광장·청계광장 및 광화문광장(이하 “광장”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것에 따른다.</p> <p>제3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u>서울특별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1. 광장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간 계획에 관한 사항</p> <p>2. 광장 운영의 전반적인 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광장·청계광장·<u>광화문광장</u> 및 <u>세운초록띠광장</u>의 <u>사용·관리</u>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두는 <u>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u>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광장·청계광장·<u>광화문광장</u> 및 <u>세운초록띠광장</u>(이하 “광장”이라 한다)의 <u>사용·관리</u>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것에 따른다.</p> <p>제3조(설치 및 기능)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u>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1. ----- -----</p> <p>2. ----- -----</p> <p>3. <u>광장 사용신고에 따른 수리 여부, 경합이 있는 신고의 처리, 신고수리내용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u></p>

3. 그 밖에 광장의 사용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위원장이 부의하는 중요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1. 학식과 경륜을 갖춘 학계 전문가, 시민
2. 시민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단체)
3.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2명
4. 서울특별시 3급 이상 공무원

4. -----  
-----  
-----

제4조(구성) ① -----  
-----.

② -----  
-----.

③ -----,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위원을 과반수로 하되,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한다.

1. 학식과 경륜을 갖춘 학계 전문가, 시민
2. 시민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단체)
3.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2명
4. 서울특별시 3급 이상 공무원